

제11조(입소정원 및 모집방법)

1. 입소정원은 25인으로 한다. 단 10일 이상 장기 입원자가 있을 경우 정원의 5%(소수점이하 반올림)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.
2. 입소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소자격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.
3. 입소대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)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 시설에 입소해있던 기초생활수급자격의 등급외자
 - 2) 노인장기요양 1~2등급
 - 3) 노인장기요양 3~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

제12조(계약목적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)

1. 계약목적은 서비스이용자가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“을”은 “갑”이 정한 비용을 “갑”에게 지불하여야하며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고자 한다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3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4.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보험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(식비, 간식비)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매월 초에 납부하여야한다.

제13조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 - 1) “을”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 - 2)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3)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2. 입소자의 의무
 - 1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- 2)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- 3)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 - 4)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5)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3. 보호자의 의무

- 1)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 - 2)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 - 3)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 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 - 5)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4.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
- 1) 시설 내에서 음주, 고성, 방가, 소요, 폭행, 도박, 절도, 흡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2) 시설 내에서 업무와 무관한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.
 - 3)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·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,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4)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5) 허가 없이 시설의 명칭, 물품,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,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6) 허가 없이 시설의 문서, 비품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7) 영양원의 청결, 도난, 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- 8) 서비스 제공시 어르신 본인의 실수나 폭력으로 인해 타 어르신 및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기물파손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경비 및 모든 문제는 본원에 책임을 지우지 않으며, 어르신의 보호자(계약자)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14조(계약의 해제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6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7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제15조(이용료 및 비용 변경)

1.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보험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과 “갑”이 책정한 비급여 부분(식비, 간식비)를 합산하여 결정하며, “병”은 매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급여 종류	등급		1등급	2등급	3~5등급
	비용항목				
시설 급여	급여 (1일)	일반	78,250 x 20% =15,650원	72,600원 x 20% =14,520원	66,950원 x 20% =13,390원
	비급여 (1일)	식비	9,600원 (3식)	9,600원(3식)	9,600원 (3식)
		간식비	1,000원	1,000원	1,000원
		상급병실 이용료	-	-	-
	1일 총 비용		26,250 원	25,120 원	23,990 원
	12개월 평균		798,400원	764,000원	729,700원

2.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비용이 무료이며 “갑”이 책정한 비급여(식비, 간식비) 부분도 면제한다.

3. 이용료는 정액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“갑”은 “을”을 비롯한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여 서비스를 결정한다.

- 1) 상급병실 사용료 (상급병실은 2인실로 TV와 냉장고를 비치한 방으로 한다)
- 2) 원거리 병원 이용 시 교통비 (원거리의 기준은 지역구를 벗어난 범위로 한다)
- 3) 외래 병원 이용 및 약제비

4. 비위관, 유치도뇨관의 교체는 병원에서 처치하며 이에 따른 외래 진료비용은 “을” 또는 “병”이 부담한다.

5. 이용료는 월 단위,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는 후불로 청구할 수 있다.

6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)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